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353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-

1. 대상회사

(1) 분할회사

○ 상 호 : 삼성자산운용㈜
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, 삼성전자 서초빌딩 18층

(2) 분할신설회사

○ 상 호 : (가칭)삼성액티브자산운용㈜, (가칭)삼성헤지자산운용㈜
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, 삼성전자 서초빌딩 16층

2. 승인내용

○ 분할방법 : 삼성자산운용㈜이 존속하면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100% 소유하는 상법상 물적분할

○ 분할 후 존속회사 : 삼성자산운용㈜

○ 분할 후 신설회사 : (가칭)삼성액티브자산운용㈜, (가칭)삼성헤지자산운용㈜

3. 승인일 : 2016.11.30.